

**KSKSKSKS**  
**SKSKSKS**  
**KSKSKS**  
**SKSKS**  
**KSKS**  
**SKS**  
**KS**

KS M ISO 787-9

**KS**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9부 : 물현탁액의 pH 측정

KS M ISO 787-9 : 2007

(2012 확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7년 10월 31일 개정

<http://www.kats.go.kr>

심 의 : 도료 및 잉크 기술심의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회 장)	노 시 태	한양대학교	교 수
(위 원)	권 태 룡	LH공사	부 장
	기 동 춘	(주)노루페인트	이 사
	김 용 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수
	박 형 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탐 장
	원 중 옥	세종대학교	교 수
	유 철 희	KCC	이 사
	정 영 재	건설화학공업	이 사
	조 성 기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전 무
(간 사)	박 현 영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에너지환경표준과	공업연구사

표준열람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

제정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제 정 : 2002년 1월 14일
개 정 : 2007년 10월 31일	확 인 : 2012년 12월 20일
심 의 : 산업표준심의회 도료 및 잉크 기술심의회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740호
원안작성협력 : -	

---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에너지환경표준과(과장 최철우 ☎ 02-509-727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http://www.kats.go.kr>).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9부 : 물현탁액의 pH 측정

## General methods of test for pigments and extenders - Part 9 : Determination of pH value of an aqueous suspension

### 개요

이 규격은 1981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SO 787-9, General methods of test for pigments and extenders - Part 9 : Determination of pH value of an aqueous suspension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KS M ISO 787 규격의 일부로 안료나 체질 안료의 물현탁액에 대한 pH값을 측정하는 일반 시험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안료나 체질 안료에 이 일반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오직 하나의 교차 기준 시험법만 안료나 체질 안료와 관련된 국제규격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측정하려는 특수 성질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일반 시험법에서 규정한 시험 절차를 특정 물질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pH값 측정을 위한 별도의 방법(special method)을 규정하여야 한다.

###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규격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M ISO 15528,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용 원료 - 시료채취

### 3 시험 시약

**신선한 증류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증류한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한 것으로써 최소한 동등한 순도의 물

물은 내약품성 유리(chemically resistant glass)로 제작된 용기에서 사용 바로 직전에 증류하고 냉각하여 사용해야 한다. 유리 용기로부터 알칼리가 녹아들어 물의 pH값이 증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5분에서 10분 동안만 증류해야 한다. 물은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된 물은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30분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밀폐된 용기는 소다 석면 튜브(soda asbestos tube)나 이와 유사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한다.